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64

발의연월일: 2022. 7. 4.

발 의 자:배준영·권명호·김상훈

유경준・이종배・홍석준

이태규 · 조명희 · 강대식

정경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도모를 위하여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등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별세액감면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특례는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 중 가장 폭넓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과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 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 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u>2022년 12월</u>	<u>202</u> 5년 <u>12월</u>
<u>31일</u>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31일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